

제429회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제 4 호

(임시회의록)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18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15)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57)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70)
6.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상정된 안건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15) 2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 2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57) 2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2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70) 2
6.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2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15)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7)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70)
6.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10시09분)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임미애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임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3월 경북, 경남, 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의 피해주민과 지역 재건을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김태선 의원, 박형수 의원, 임미애 의원, 이만희 의원, 이달희 의원이 각각 산불피해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조정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님들이 받으신 책상 위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이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지역주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의 원하는 내용을 모두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분들께서 다시 희망을 갖고 재기하여 지역을 재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조해 주시고 법사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산불특별법안이 위원회(대안)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되게 됐습니다. 정말 감회가 남다릅니다. 우리 지역의 현장에서 정말 아픔을 얘기하고 미래의 앞날이

캄캄한 그런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며 아직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크게 늦지 않게 위원회안이 완성되게 되고 산불피해로 인해 희생된 분, 유가족분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서 정말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특히 우리 김정호 위원장님, 김형동·임미애 간사님,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주무부처인 산림청, 경상북도 그리고 행안위에서도 적극 기재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이번에 함께해 주셔서 행안부장관님 나와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정부에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조항들이 많습니다. 부처의 의지를 믿고 본법에 굳이 규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현행법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더욱 폭넓게 하고 초토화된 피해지역을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곳으로 재건하겠다는 특별법 제정 취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잘 소통하시고 특별법 제정 취지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장관님, 청장님,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호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대형산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법안 심사도 하고 또 제도개선소위도 가동을 하고 했는데요. 제도개선소위를 한 번 최근에 했었습니다. 그것하면서 제가 좀 느낀 점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울진 산불의 경우에는 산림복구예산은 피해액의 195%가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주택·농업시설 등의 복구비는 전체의 26%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산정은 하지 않았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산불이 났을 때 산림복구예산은 엄청나게 대규모로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투입되는 반면에 산불로 인한 피해 이재민들의 지원이나 일상생활 복귀에 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불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오늘 보고도 됐습니다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의 근본 원인, 과연 지금 현재의 산림정책이 산불을 예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것인지 혹시나 시대착오적인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진단을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짚어 보지 않으면 또 내년, 내후년 봄에는 또 다른 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높지 않나 그런 부분이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불특위 기간이 10월 말까지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여야 교섭단체 간사님들 그리고 위원장님께 이 기간을 1년, 하다못해 내년…… 보통 봄에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3, 4월인데 그러면 11월, 12월, 1, 2, 3, 4, 6개월 연장하면 내년 봄,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점까지는 저희가 계속 이 산불에 대한 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대책을 함께 국회가 논의하고 또 산림 당국과도 긴밀히 소통을 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하고 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질타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산불특위 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산불특위이긴 합니다마는 산불과 관계되는 게 산사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8월 초에 산불특위가 올해 초에 산불이 났던 산청 지역에 또 산사태도 난 것은 아닌지 현장 방문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산불과 산사태는 긴밀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불특위를 산불산사태산림재난특위로 확대 개편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 연관성, 문제점이 없는지 같이 한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짚어 보는 것이 또 적합하지 않은가 그 의견을 드리고요.

8월 초에 산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 당국에서는 일주일 이내에 조사를 했었고요. 제가 어제 산림 당국에, 산림청에 물어보니까 어제 현장조사의견서가 제출됐다고 그래 가지고 어제 입수를 했습니다. 왜 하필 어제, 산사태가 난 게 7월 19일인가 20일인가 그때인데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어제서야 이렇게 두 달 만에, 산불특위 하루 전에 이 보고서가 산림청에 제출됐다는 게 좀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번 다 읽어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읽어 보고, 여러 말을 쓰셨겠지만 아래 가지고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없지 않나라는 심각한 저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차규근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우선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의견 주시고요.

○차규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정호 그것 관련해서는 회의 말미에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법안소위를 같이 했는데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큰 보람이 있었고 삶의 보금자리와 일터를 잃은 우리 산불 지역 주민들에게 그나마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 위로가 되고 다가오는 추석에 그래도 시름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저도 제기를 했는데 특히 5장에 있는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은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난개발의 우려가 여전히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장관님과 산림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산불 지역이 난개발되지 않고 회복과 새로운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영주·영양·봉화 지역구의 임종득 위원입니다.

지난 두 달 이상을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좋은 특별법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부분들은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칙에 보면 1조에 아주 중요한, 14개 조항과 관련돼 가지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적용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14개 조항도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시바삐 이 법안이 적용되기를 바라는 피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또 아쉬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아마 개별법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 개별법에 대한 작업들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추가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률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의결에 앞서 비용추계 및 공청회 생략 관련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안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국회예산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법안은 제정법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2장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등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제9조에서 제22조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장 피해지역 복구 및 지역재건 지원 제23조에서 제40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5장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41조에서 제61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6장 보칙 및 제7장 벌칙과 부칙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임미애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초대형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초대형산불로 생활기반이 모두 전소된 심각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분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사회의 온전한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 및 지역 재건 사업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지원 조직 또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신속히 구성하고 피해구제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의 의결에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사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산림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존경하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초대형산불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해 국회와 현장에서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아끼

지 않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법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어 피해지역 주민들께 힘이 되고 지역 재건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임미애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피해지역의 산림이 사람을 살리는 숲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차규근 위원 질의 좀……

○위원장 김정호 질의가 있습니까?

○차규근 위원 예, 아까 전에 기회 주신다고 말씀을, 법안 심사 후에 하라고 아까 말씀 하셔 가지고……

○위원장 김정호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 좀 들어 있을 텐데요. 위원장의 얘기를 듣고 부족하다 싶으면 추가 발언 드릴게요.

○차규근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저도 추가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임종득 위원님 지금 발언하실 겁니까?

○임종득 위원 나중에 시간을 준다면 그때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정호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에 대해서 이미 차규근 위원께서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활동시한이 10월 말까지이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에 밀도 있게 관련된 법안의 심사를 성과 있게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마무리 안 된 게 제도개선소위에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사가 의견 개진이 있었고 정부도 이를 9월 말쯤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개선소위가 전체회의에 좀 보고하고 또 정부가 개선방안도 한번 보고를 받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서 대략 빠르면 9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 할 예정이지만 시행령은 법 통과 이후 3개월 이내에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 연말 까지 갈 것 같은데요. 시행령을 행안부장관 오셨으니까 꼼꼼하게 만들어 주시겠습니다만 이 내용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피해구제 등에 관련된 예산안이 11월 중에 국회에서 감액·증액 심사하지 않습니까? 혹여 그 과정에서 빠진 게 있다면 보완할 필요도 있고 해서 예산안 심사까지 마치고 난 다음 또 시행령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연후 까지는 우리 특위가 소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것은 앞서 양당 간사님하고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전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추가 발언 신청하신 분들 있으면 의견 발표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부터……

○**임종득 위원** 제가 궁금하고 또 주장하고 싶었던 내용을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형산불을 바라보는 우리 정부나 국회의 시각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연히 한번 일어나는 대형산불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뉴노멀이 될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지금 움직임 자체는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산불에 한번 대응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다행히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을 부처에서 마련을 하고 그것을 특위에 와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촘촘히 들여다보면서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법령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어떤 임무 분장의 문제라든가 역할의 문제, 그다음에 제도개선의 문제,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까지를 다 다루는 시간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임미애 소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저는 영양이 지역구인데 매달 내려가서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거는 느려요.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는 우리 소위가 지속하면서 법률이 시행령까지 완료되고 시행되는 과정, 제도소위에서 우려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착되는 과정들을 다 보고 나서 이 기한을 만료해도 늦지 않다. 그게 지금 올해 말이라고 한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더 연장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 위원장님, 먼저 연말까지 연장을 이렇게 고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후위기 시대에 앞으로 이 대형산불이 더욱더 자주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1년 정도 연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산불은 주로 3·4월 봄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연장해서 그 이후에 1·2·3월까지는 저희가 계속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2026년에는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더라도 소형화에 그치도록 우리가 더 이렇게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한 번 더…… 추후에 일단 12월까지 연장된다 그러면 12월 내에 다시 한번 여야 간사님들께서 내년 한 3월 정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올해 대형산불, 경북 산불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외부의 민간 전문가들이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여러 시민단체들이 합치해 가지고 2025년 경북 산불 피해확산 원인조사 프로젝트를 얼마 전에,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일정을……

장관님, 보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차규근 위원 청장님, 보이시지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차규근 위원 이분들 조사 결과가 내년 2월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산불특위도 이분들 조사 내용도 한번 들어 보고, 이분들이 그냥 막연한 오해와 억측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의 자체 조사 결과가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거를 우리 국회가 한번 들어 보고 오해가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풀어 가지고 정부기관이 불신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오해가 아니라 진짜 이분들의 조사 내용이 맞다면 그러면 근본적인 산불 대응정책에 대한 변화를 좀 기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산사태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산불과 산사태의 관계가 있고 산사태도 폭우가 내리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오늘 행정안전부장관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산림청의 이번 산사태 피해 현장조사 의견서에 대한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8월 초에 산청에 갔었습니다. 산청에 갔을 때 맨 처음에 간 곳이 시천면이고, 시천면 다음에 산사태 현장 간 곳이 산청읍 내리였습니다. 그 산장에 토사, 산사태 나 가지고 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그곳인데 거기는 임도나 그런 거는 없었고 다만 왼쪽 언덕 위에 개간한 밭이 있었고 그 밭에서 산사태가 발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림당국의 산사태 피해현장조사 의견서를 보면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상자료를 보면)

극한 호우, 화강암반층, 토사 발생, 이상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산사태 발생 원인은 활용하지 않던 작업로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작업로는 임도나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개간, 사람의 손에 의해서 토양 안정성이 훼손된 거기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이 산사태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이 산간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 인근에 거기에 임도든 태양광이든 개간한 것이든 꽃밭이든 사람이 손댄 흔적이 있다고 그러면 ‘그곳이 산사태 위험이 높으니까 주의하십시오. 뭔가 보호벽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안내나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게 없습니다. 산림청이 지금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기준에 이런 게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 산사태 원인조사 보고서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게, 개간 그 밭에 대한 평가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또 부리도 있습니다. 부리가 이번에……

○위원장 김정호 차규근 위원님, 조금 논의 대상을 활동기한 연장으로 축소해서, 인과 관계로 막 따지고 들어가면 논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행안부장관님 곧 이석하셔야 되고, 일단 그렇게 하시고,

○차규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산사태는 이것으로 하고요. 한두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위원장 김정호 그 관련해서만, 연장 관련해서만……

○차규근 위원 원래 전체회의 때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해서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2차 회의 때 임도에 관한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드렸고 위원장님께서 그때 여야 간사 협의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임도나 이런 산림정책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지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님 말씀 이후에 토론은 있었지만 일방적인 주장만 해서 서로 간에 상호 검증이 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려면 이 캐캐묵은 수십 년 된 논쟁을 서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그런 상태를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전문가들 앉혀 놓고 서로 쌍방의 주장에 대해서 검증·재검증하고 반론·재반론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뭔가 공론화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임도, 숲가꾸기, 여러 가지 산불·산사태에 관련된 쟁점 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12월 이전 그 기간 내에 한번 공청회를, 산림정책 이슈별로 공청회를 꼭 한번 좀 했으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하나가 그때 제가 출석 기관장 문제 관련해서 국방부, 산불 토론회 가니까 헬기로는 부족하다, 큰 고정익 항공기가 동원되어야 된다, 그런데 국방부 협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국방부가 여기 나와야 된다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국방부가 안 나왔거든요. 다음 회의는 국방부가 나오도록 좀 이렇게 검토,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가 기후위기 시대에 산불 피해목을 벌목해 가지고 침으로 만들어서 화력발전소로 보내는 미이용 바이오매스 문제가 또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점검하기 위해서 그때 산자부 출석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자부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국방부나 산자부 꼭 출석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번에 산림정책 전반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회가 좀 짚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중간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소관 상임위가, 농해수위에서 산림청 관련해서 그렇게 그런 부분을 밀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산사태까지 확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후재난 전체로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데, 국회에 이미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저희가 당초 출범했던, 여야 합의로 출범했던 취지가 산불 관련해서 피해구제, 조금 더 나간다면 제도개선 여기에 국한해서 한시적으로 이 특위를 하기로 한 것인 만큼 관련된 범위나 내용을 막 확장하는 것은 충돌과 중복의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관 상임위나 또는 해당 특위로 우리가 당초 취지를 이룬다면 그렇게 이관하고 저희는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라고 좀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종득 위원님이나 차규근 위원님이 양해를 하시면 일단은 연말까지, 12월 말 까지 1차, 우리 소위원회 소임 자체를 매듭짓기 위해서도 그 정도의 연장은 필요하다라고 동의하시면 하고, 그리고 아까 제기하신 그런 문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못

한 한계를 적시하고 기후위기특위나 농해수위나 행안위나 이렇게 기후재난 관련해서 좀 지속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은 그렇게 이관을 우리 보고서에 좀 명시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안 그래도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중간보고서는, 우리가 더 필요하다 또는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지만 기한의 한계 때문에 다 못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서 이 부분이 여야 간에 기간이 연말까지라도 연장하는 게 협의,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신성범 위원 좋습니다. 합리적이십니다.

○임종득 위원 12월까지 동의합니다.

○차규근 위원 1차로 12월까지 연장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임종득 위원 12월까지 일단 하는 걸로……

○차규근 위원 예, 일단 그렇게 하고……

○위원장 김정호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신성범 위원 의견을 내는 거지, 특위 의견을.

○위원장 김정호 그리고 국회법 절차에 대한 거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무리 지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정호 김형동 박정현 신성범 이달희 이원택 임미애 임종득 차규근 허성무

○청가 위원(1인)

이만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황충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산림청

청장 김인호

기획조정관 이종수